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2001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나2001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014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로

담당변호사 김영호, 김상원, 이진영

변론 종결 2024. 8. 13.

판결 선고 2024. 10. 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2014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22. 1. 11. 접수 제9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5행부터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F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은 대부분 D의 계좌로 입금된 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D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이 유통된 것이 아니고, D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얻었다거나 사업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②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2021. 10.경으로 보이는데,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D은 2020년경부터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22. 2.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인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거나, 정당한 가격에 거래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를 하였다거나, 매매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피고 스스로 '형을 돕기 위해 당장 지급이 가능한 돈'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의 변제자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한 부동산을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 전부를 B과 별개의 법인격인 D에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B의 변제자력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성욱

판사김영호

판사조준호

별지